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정 등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2일에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합니다)을 고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기초서류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이 기준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보험계약의 사업비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 합니다)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1.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정

가.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의 배경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관련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196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그런데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전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검사제재규정에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등에 따른 과징금 조정 요건·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초서류 관련 위반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는 보험영업 전반을 규율하므로 기초서류와 관련한 위반 행태와 위반 기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기초서류 관련 위반 행위의 경중, 고의·과실에 따른 조정비율을 세분화하고, 위반기간의 장단에 따라 과징금의 가중·감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나. 위반행위의 경중, 고의·과실에 따른 과징금 조정비율 세분화

검사제재규정에는 가중·감경사유에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가중(20% 이내), 경미한 경우 감경(50% 이내) 규정이 있

나, 중대·경미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경중, 고의·과실에 따라 조정비율을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고, 중대·경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위반행위의 경중 및 고의·과실에 따른 조정비율 〉

구 분	고 의	과 실
중대	기본과징금액의 120%	기본과징금액의 75%
보통	기본과징금액의 75%	기본과징금액의 50%
경미	기본과징금액의 50%	기본과징금액의 25%

다. 기초서류 위반 기간별 가중·감경기준 마련

검사제재규정에서는 위반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일평균 위반금액 x 0.1%(6개월 미만) 또는 0.2%(6개월 이상)씩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연간 수입보험료이기 때문에 현행 검사제재규정상 일평균 위반금액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고, 기초서류 위반이 장기간일 경우 가중할 필요는 있지만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비례척상 감경할 필요가 있는데, 검사제재기준에 의하면 위반기간에 따른 감경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산정이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여 위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가중·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반 기간에 따른 조정비율 〉

구 분	고 의
3년 ~	조정된 기본과징금의 150%
2년 ~ 3년	조정된 기본과징금의 120%
1년 ~ 2년	조정된 기본과징금의 110%
9개월 ~ 1년	조정된 기본과징금의 100%
6개월 ~ 9개월	조정된 기본과징금의 75%
3개월 ~ 6개월	조정된 기본과징금의 50%
~ 3개월	조정된 기본과징금의 25%

2. 보험업 감독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가. 저축성보험 등의 사업비 부과체계 개선

개정 규정은 보험계약 체결 후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분급비중을 확대하여, 보험설계사 채널의 경우 50% 수준,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은 각각 70% 및 100%까지 분급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수수료(계약체결비용)를 일반 보험설계사 채널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였고, 사업비 후취형(사업비를 보험료가 아닌 적립금에서 차감하여 부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변액보험은 사전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변액보험 등에 대해 저축, 펀드와 유사한 후취 방식의 사업비 체계 도입을 유도하였습니다.

나.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기존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기존 규정”이라 합니다)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투자적격(BBB-) 이상 또는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인 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나, 개정 규정은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신용등급(A- 이상)을 지닌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외국환을 보유하는 경우 OECD국가 통화 이외의 외국환에 대해서는 환변동 위험을 헷지하여야 했으나, 개정 규정은 OECD국가 이외에도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중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통화, 해외 자회사 출자금에 대해서도 환헷지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다. 벤처 투자 활성화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15% 이상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되어, 자회사 신규 편입시에는 출자액이 전부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① RBC 비율 150% 이상, ② 유동성 비율 10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15조 등).

개정 규정은 이러한 요건을 벤처캐피탈에 대하여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벤처캐피탈의 30% 이상 지분을 투자한 경우에 자회사로 분류되도록 함으로써,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라. 기타 자산운용 규제 완화

동일채권 투자한도(총자산 7%)의 예외 대상을 현행 통화안정채권, 산업은행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등 외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연계형 보험(보험료적립금의 적용이율이 특정 자산의 수익률 등에 연계된 보험)에 대하여 일반계정에서 초기투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희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36	E-Mail. yhjo@shinkim.com
● 이수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04	E-Mail. leesh@shinkim.com
● 길영민 변호사	TEL. 02 316 1650	E-Mail. ymkil@shinkim.com
